

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7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(버스비)를 지원
- 이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버스 이용이 불가
- 이에 따라 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중교통수단에 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 추가 조항 신설(안 제2조제2항나목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5. 6. 2.~2025. 6. 23.(21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

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대중교통수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.
 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,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
 - 나. 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교통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교통정책과장 이 학 준
	팀장 직위 · 성명	대중교통팀장 정 연 호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최 성 규 (031-790-545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대중교통수단”이란 <u>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,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</u></p> <p>3. ~ 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대중교통수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,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</p> <p>나. 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4. 5. 16.] [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17호, 2025. 5. 16., 일부개정]

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도입)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,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)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.